

1.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6,564,558	21,196,937
일반회계	656,784,973	19,703,549
특별회계	49,779,585	1,493,388
기타특별회계	49,779,585	1,493,388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6,910,388	207,312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552,324	106,570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60,900	7,8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79,413	17,38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940,047	238,201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63,908	25,9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10,290	21,30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84,177	152,525
수질개선특별회계	17,526,014	525,780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6,352,124	190,564

제 2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27,334,646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21,834,646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2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